【 16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8. 11. 23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19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된바, 동 시행령 개정과 관련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 신설(안 제19조의 2)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 신설 (안 제19조의 3)

○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조항 세부적으로 구분 규정(안 제22조)

○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료율 구체적 규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율 규정(안 제23조)

○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23조의 3)

○ 수의계약 매각범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39조의)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 신설 (안 제39조의 4)

○ 관사관리 축소(안 제51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교부율"을 "귀속비율"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초과"를 "추가" 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광역시 이상지역은 일단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 토지, 일반시지역은 일단의 면적이 600제곱미터이하 토지 (당해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 군지역 : 일단의 면적이 900제곱미터 이하토지
3.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

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때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 제2항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제6항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로 하며, 제7항을 삭제하고,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제4항중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 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중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 를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 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는 300제곱미터이하, 광역시 · 시 · 군의 읍 · 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 폐구거 ·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 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등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50조중 "군수, 실·과장등" 을 "군수, 부군수, 시설관리사등" 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군수 관사
2. 2급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 · 기타 관사등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 ·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사무의위임) ①(생 략) ②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시는 군수는 당해 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처분대금 ·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 30(도 교부율 에 따라 조정)을 군에 귀속시킨다.	제3조(관리사무의위임) ①(현행과 같음) ②- 귀속비율- - - - - - - - - - - - - - - -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생 략) 1. 보상금액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생 략) ②~⑤(생 략)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현행과 같음) 1. - - - - - - - -부동산시가표준액 -추가- 2.(현행과 같음) ②~⑤(현행과 같음)
제10조(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및처분) ①~② (생 략) ③(생 략)	제11조(관리및처분)①~②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 일반시지역 : 600제곱미터이하 토지 2. 군지역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 3. 시가 1 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1. 특별시·광역시 이상 지역은 일단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 토지,일반시지역은 일단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 군지역 : 일단의 면적이 900제곱미터 이하 토지 3. 시가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④(생 략)	④(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신 설 〉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현 행	개 정 안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한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삭 제)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 제〉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4. 영 제9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현 행	개 정 안
5.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양주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또는 양주군이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현 행	개 정 안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생략) 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현행과 같음) ② - 토지시가표준액 -

현 행	개 정 안
③~⑤(생 략)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③~⑤(현행과 같음)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
⑦제1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⑦(삭 제)
<신 설>	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신 설>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현 행	개 정 안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③(생　략)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생　략)	제24조(토석채취료 등))①~③(현행과 같음) ④ -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 ⑤(현행과 같음)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3. (생　략)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3. (현행과 같음)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신 설〉</td><td>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td></tr>
<tr><td>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군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td><td>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td></tr>
<tr><td>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
②계약종료의 년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td><td>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第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第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第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생 략) ②~③(생 략)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第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④ -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 -
第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7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第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2.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공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동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 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第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

현 행	개 정 안
	2.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第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실·과장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	第50조(정의) - - - - - - - - - - - - - - - 군수,부군수, 시설관리사등 -
第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관사 3. 3급 관사 : 기획감사실장용 관사 4. 4급관사 : 1급 내지 3급이외의 관사	第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관사 등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 6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第118조의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第88조 (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4. 9.29)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개정 '98.7.16)

第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법 제82조제1항 및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의 관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 및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한 축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의 만료시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공장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7.16)

第90조(잡종재산의 대부기간)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 7.16)

1. 삭제 (90.11. 6)

2.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는 20년
3. 기타의 물건은 1년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91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7.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설한 공장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최초로 준공된 공장의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8. 7.16)

제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등)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100분의 3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90.11.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사용 · 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결정 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3. 9.23)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중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 7.16)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0.11. 6)

1. 경작목적의 농경지
2. 목축 · 광업 · 채석목적의 재산
3.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4. 청사의 구내재산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요율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제92조의2 (대부료 등의 감면)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98. 7.16)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 농어촌산업단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을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90.11. 6)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2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3. 기타 규모 ·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②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8.7.1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하는 재산의 범위 기타
26.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신설 98. 7.16)
2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신설 98. 7.16)

제95조의2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 ①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당해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11. 6)

제96조 (잡종재산 가격의 평정등) ①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98. 7.16.)

⑩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로 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98. 7.16)

제99조 (사용료등의 귀속)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료·대부료·처분대금·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 9.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 9.29)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 연립주택 ·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인구의 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신설 98. 7.16)

③잡종재산중 동산(선박을 제외한다)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국유재산법

제40조 (매각대금의 납부)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4. 1. 5)

②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4. 1. 5)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 1. 5)

1. 공용목적에 사용할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때
2.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3.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해 · 수해 · 설해 · 한해 · 냉해 · 지진 · 산사태 · 해일등 급격한 기상변화 또는 지각변동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전쟁 · 사변등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계속하여 점유 ·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정한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신설 96. 6.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내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6. 6.15)

[전문개정 94. 4.12]

제44조의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6.15, 97.10.1)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재개발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기술연구집단화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6.15, 97.10.1)

1.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1만제곱미터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재개발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토지중 제1항제4호의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개정 97.10.1)

④법 제4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94.4.12]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4. "외국인 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처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는 5년이상의 차관

제9조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3조 (국 ·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①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 공장 기타 국 · 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 · 수익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 동법 제3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동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 동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동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6조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등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및 동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⑧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⑨제2항 및 제8항의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없다.

第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국가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第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시사항(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외국인투자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개발·관리한다.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

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된 경우로서 이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이 이를 관리한다

④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장등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의한 지방산업단지로 개발 할 수있다.

⑤외국인투자지역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은 이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2항의 규정에의한 고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⑥이미 개발이 완료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의2 (외국인투자의 정의) ②법 제2조제1항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인이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외국인이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③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번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외모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 모기업이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제9조 (조세감면의 기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나. 1995년 4월 1일 이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신고한 자가 수도권(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9에 규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창업하여 설치 · 운영하는 경우
2.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병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으로서 제3항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 투자의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④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안에서 창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국 · 공유재산의 임대등) ①법 제13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당해 토지등의 가액에 1,000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작용되는 이자는 연 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소유 토지등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가나 분할 납부

③법 제13조 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나. 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여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④법 제13조 제6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가 감면되는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다

1. 법 제13조 제6항 제1호 및 지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의한 감면율
   가.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

나. 제3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2. 법 제13조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⑥법 제13조 제7항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사용료 또는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가 감면되는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⑧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등) ①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로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000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개발·관리하여야 하며, 그 지정계획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 · 고규모 및 사업내용
4.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 가능성
5.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가
6. 재원조달계획
7.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8. 개발사업의 시행자
9.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10.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11. 수용 · 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네는 그 세목
12. 기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시 ·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 군 · 구청장(자치궁의 구청장을 말한다) ·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정계획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제4항에 의거 제출된 지정계획을 기초로 당해 유치대상 외국인 투자의 실행 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고용증대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 ·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지 못한다.

⑧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6월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 ·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준충족 요구기간을 3월이상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 이외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개발 · 관리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지방산업단지의 지정) ①지방산업단지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 · 도지사는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그 지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시 ·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①농공단지는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4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 · 조립 · 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물품제조 공정(가공 · 조립 · 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 (아파트형공장)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아파트형공장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상황 및 건설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②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 건축허가 · 사용승인 및 설립완료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아파트형공장의 입주절차, 관리, 분양, 임대가격의 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④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을 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그 국 · 공유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등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第19조(국 · 공유재산의 매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 · 기술연구집단화단지(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연구집단화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 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가격 · 임대료 · 임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의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탁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 4의 규정은 공유 부동산의 신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 운영자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 용도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⑤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 지방재정법 제84조,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자에게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용 · 수익의 기간 ·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④제3항의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도시재개발법

제4조 (재개발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내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용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이 노후 ·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3. 인구 · 산업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구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상황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현황
4. 재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개발사업의 명칭
2. 재개발사업구역 및 그 면적
3. 공공시설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4. 건폐율, 용적율,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높이 및 층수, 연면적 또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에 관한 계획
5. 사업시행예정시기(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한다)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중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종전의 도시계획결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시·도지사는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농지법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운용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 ·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 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 절에서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수입금액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농지소득금액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특수작물 : 과수 · 인삼 · 연초 · 소채 · 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 하천법

제65조 (수입금사용 제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 · 점용료와 사용료, 양여받은 폐천부지로 인한 수입금 및 기타 수입은 하천의 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 재산 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19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된바, 동 시행령 개정과 관련 양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 요 골 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 신설(안 제19조의3).

○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 세부적으로 구분 규정(안 제22조).

○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료율 구체적 규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율 규정(안 제23조).

○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 신설(안 제23조의3).

○ 수의계약 매각범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39조의)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 신설(안 제39조의4).

○ 관사관리 축소(안 제51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98. 9. 16～98. 10. 7일(20일) 입법예고 완료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